

## 【 4 】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8. 2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종전행정자치부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99. 4. 16일자로 전문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군수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할 투자심사 대상과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조)

#### (1) 투자심사대상

- (가)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나)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 (2) 심사제외대상

- (가)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 (나)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투자심사시기를 상·하반기별로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투자심사결과를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등으로 구분기준을 정하고, 심사의뢰된 사업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6조)
- 바.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하여 편성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투자사업의 심사결과를 각종 지방재정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함.(안 제9조)
- 아.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규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적·경제적 효율성 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군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사업의 심사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과소장 또는 양주군재무회계규칙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제 1 관서의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감사실장은 투자심사를 한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자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조치) ① 사업주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사업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편성시 제6조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연계운영)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증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양여금지원대상의 선정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군수는 투자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효과의 분석) ①군수는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權 地方財政法

務가 있는 現金 또는 有價證券이 있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歲入·歲出豫算의로 처리할 수 있다. <新設 94·12·22>

**第30條 (豫算의 編成)** ① 地方自治團體는 本令 및 條例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승認的인 基準에 의하여 그 經費를 算定하여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資料에 의하여 일정하게 그 財源을 推定하고 經濟의 現實에 適應하도록 그 收入을 算定하여 이를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政投·融資事業(이하 “投·融資事業”이라 한다)에 관한豫算을 編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事業計劃의 타당성등에 대한 審查를 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이豫算을 編成할 때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財政計劃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融資事業에 대한 審查結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94·12·22>

⑤ 地方自治團體의 “每”會計年度의豫算編成基本指針은 行政自治部長이 관계부처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前年度 7月 31日까지 地方自治團體에 示達하여야 한다. 다만,豫算編成基本指針이 시달린 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國家政策이 수립되거나 变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린指針을 变경하여 시달릴 수 있다. <改正 94·12·22, 99·1·21>

**第31條 (豫算의 내용)** ①豫算是豫算總則, 歲入·歲出豫算, 繼續費, 債務負擔行爲 및 明示移越費를 總稱한다.

②豫算總則에는 歲入·歲出豫算, 繼續費, 債務負擔行爲 및 明示移越費에 관한 總括的 規定과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限度額 기타豫算執行에 관하여 諸多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第32條 (豫算의 구분)** 地方自治團體의 歲入豫算 및 歲出豫算是 그 내용의 性質과 機能을 고려하여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第33條 (繼續費)**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工事나 製造 기타의 事業으로서 그 完成에 數年來를 오하는 것은 所要經費의 總額과 年度別 금액에 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繼續費로서 數年來에 걸쳐 支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繼續費로支出할 수 있는 두張은 당해 會計年度로부터 5年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시 그 두장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第34條 (豫備費)** 地方自治團體는 예측할 수 없는豫算의支出 또는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會計(教育費特別會計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豫備費를 計上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94·12·22)

**第35條 (債務負擔行爲)**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地方自治團體의 債務負擔의 원인이 될 契約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한 다음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5·16)

제29조의3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29조제3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5·16)

### 제 3 장 예 산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5·16, 98·7·16>

1. 시·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95·5·16>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지방재정법시행령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95·5·16. 98·7·16>

⑤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5·16. 98·7·16>

(본조신설 92·3·30)

제30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8·7·16)

제30조의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8·7·16)

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3·30. 93·9·23>

1. 벌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주 99)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 2. 법 제 4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등의 경우

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40조제 2 항 및 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출장소”로 본다.

(본조신설 95·7·1)

제41조 (합의체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체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의체행정기관 설치의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견의·실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7·1>

제43조 삭제 <94·7·6>

제44조 (이장의 일정) ①법 제 4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국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임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일정한다.

③읍장·면장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일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 제 5 장 제 5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그을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1>

②법 제1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첨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4·1>

(총 62)

## &lt; 오 지 &gt;

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개정령 공포】

[체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

자체실사 : 기준 10억 ~ 20억 → 10억 ~ 50억

도심사 : 기준 20억 ~ 100억 → 50억 ~ 200억

중앙심사 : 기준 100억 이상 → 200억 이상

투자심사주기를 정기화

상반기 : 4월 30일까지 완료

하반기 : 9월 30일까지 완료

일몰제도 및 재심사제도 도입

3년 이상 사업이 지역 또는 보류된 사업 : 재심사

투자심사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 "

찰조

처	리	과	기획	간사
달	당	자	감	지

인생탁  
기

도

[가] 1번지 / FAX 249-2129, ☎ (031) 249-2255  
락태기

군수	총령부	지	시
율지	법무부 4. 1. 5.	결	부군수
시간		재	가까운
면호	7056(291)	실장	가진길

  

공	담당주사	이	진
찰	찰	찰	찰

제 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실사규칙 개정령 공포

1. 행자부 제경 13300-378('99.4.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실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7호)을 별첨과 같이 개정·증정하였으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제도가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실사규칙 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47호) 1부. 2부.

정 기 도 지 사

발는곳 : 거(제의 1, 2), 너(1, 12, 16, 20, 7), 더( ), 도의회(1)

-317- &lt; 1, 4, 5, 10, 11, 12, 14, 21, 22, 23&gt;

## 1. 개정이유

지역경제규모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실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투자실사의 주기를 상·하반기의 정기실사제로 함으로써 투자실사결과와 재정계획이 연계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글자~~

가.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 사업,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실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조정함(안 제3조).

나. 투자실사의 주기를 상·하반기의 정기실사제로 하여,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투자실사결과가 재정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8조).

다. 투자실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라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 문화관광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제신설 · 폐지 등 :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47 호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규칙개정령안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를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2. 시·도의 퇴심사

-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 3. 중앙의 퇴심사

-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
-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실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실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실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실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실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실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위사업계획서 /
-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
- 3. 회계별 가동재원판단서 /
-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상반기 실사에 있어서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실사에 있어서는 9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실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실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실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실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실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

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지방양여금의 지원
5. 국고보조금의 지원
6.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경기 도

군인정책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산로 3가 1번지 / FAX 249-2129. ☎(033)249-2955  
재정기획관실 기획관 김정부 달당자 박태기

문서번호 재정 13300- 644

시행일자 1999.4.15 (19)

발을 받는곳 참조

참조

선 결	설계	지 시
점	일자	
시간		
수	번호	달당주사
번호	100700X	01213
처	리	등
과	기획관실	
당	자	감
	지명	람

제 을 지방자치단체 토지임уществ위원회 운영 척도

1. 행자부 재경13300-373('99.4.13)호 및 행자부 예금 제15호('99.1.18)호와 관련입니다.

2. '98.7.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임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이내로 토지임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예금 제15호 제15쪽에 토지임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법취지에 의한되고 재정 계획과 토지임사는 업무성격상 상이함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맞게 토지임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지사

받는곳 :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장기 발전·감사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1993. 3. 29]  
[훈령 제288호]

개정 1996. 4. 4 훈령 제343호

개정 1997. 5. 7 훈령 제38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규칙(내무부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투자실사대상)  
①이 규정에 의한 실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
2. 의사 또는 지방채 기채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투자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결로가 선행된 사업(국·도비 보조사업)
3.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 3 조(투자실사기준) 투자실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지방 중기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적, 경제적 수익성 등

제 4 조(투자실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군투자실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대한 실사를 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조(투자사업의 실사절차) ①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사업시행 전년도 2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투

##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장기발전·감사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사의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대상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사의뢰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발표 후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실사의뢰된 사업 중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사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실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투자심사의뢰서 및 실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⑤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실사, 분석을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실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사분석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실사결과 조치) ①실사의뢰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실사결과를 사업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예산부서는 투자심사결과를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예산부서와 실사의뢰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 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선정

4.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선정

제 7 조(사후 효과분석) ①기획감사실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사후효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장기 발전·감사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제8조(세부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의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3. 3. 29 훈령 제288호)

-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양주군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1991. 12. 9 훈령 제27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4. 4 훈령 제3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7 훈령 제3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



1999년 7월 19일

경기도조례 제2015호

##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실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실사대상)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1. 도의 사업으로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지방채사업을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군의 사업으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실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결托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 4. 재정·경제적 효율성등

\* \* \* \* \*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투자실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에 충분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즈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국장 또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시·군의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상반기는 2월 28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도지사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실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 (투자실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의뢰서 또는 자체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기획관리실장은 투자실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는 5월 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5일까지 실사의뢰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심사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증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실사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실사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 (투자실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증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양여금 지원대상의 선정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11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효과의 분석) ①도지사는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사의뢰자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지방재정특·융자사업심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제정

### □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종전 행정자치부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99. 4. 16일자로 전문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군수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할 투자심사 대상과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조)

(1) 투자심사대상

- (가)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나)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2) 심사제외대상

- (가)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 (나)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투자심사시기를 상·하반기별로 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투자심사결과를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등으로 구분기준을 정하고, 심사의뢰된 사업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7조)
- 바.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투자사업의 심사결과를 각종 지방재정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함(안 제9조)
- 아.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의 증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별 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3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 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현행규정)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예고대상”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